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9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본 조례의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함.(안 제10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28. ~ 2022. 10. 1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2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25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600원</u></p> <p>② (생략)</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p> <p>1. ----- ----- ----- <u>800원</u></p> <p>2. ----- ----- ----- <u>1,6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10조(안) 적용으로 세액공제대상이 증가하여 세수감소로 인한 비용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됨
- 예상되는 비용은 세액공제액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액으로 추계액은 연간 9,936,850원임

## 4. 작성자

성 명	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김은진 (담당자: 세무7급 김선옥)
연락처	02-2600-6229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30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세무1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본 조례의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 □ 주요내용

-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함(안 제10조)
- 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 및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3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세무1과	
	담당자명	김선옥	전화번호 02-2600-622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세무1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본 조례의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b>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b>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세무1과장 귀하			



# 【 관계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 12. 28.>

⑤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